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합516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함성일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677,368,2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7,368,2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7. 2.경 의정부시 C 주유소용지(이하 ‘주유소용지’라 한다)를 D에게 1,90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7. 3. 9.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이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원고(도봉세무서장)는 B에게 위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1. 10. 10.로 하여 양도소득세 842,219,600원을 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B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880,119,460원(가산금 포함)이다(이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으로 이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는 2017. 3. 14. 본인 소유의 의정부시 E 답 518㎡(위 토지는 2021. 12. 27. 별지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E 답 11㎡와 F 답 507㎡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10.자 매매(거래가액 2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동생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원)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경기도 양주시 G	130,000,000	

	부동산	경기도 의정부시 H	113,568,600	
	부동산	경기도 의정부시 I	1,716,000	
	소계(①)		245,284,600	
소극재산	조세채무	양도소득세	842,219,600	
	조세채무	지방소득세	84,221,960	
	근저당권 채무	경기도 양주시 G	80,000,000	2013. 8. 28. 발생한 J은행 에 대한 대출원금
	소계(②)		1,006,441,560	
합 계(③)			△ 761,156,960	채무초과
(①-②)				

라. 피고는 2020. 5. 15. 이 사건 부동산을 K 주식회사에 1,177,368,243원에 매도하고 2020. 7. 28. 위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매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7406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반환 내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1. 24. B와의 협의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합계 5억 원을 B가 지시하는 B의 인척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B는 2020. 11. 25.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7. 3. 14.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사해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에 대해서 2021. 10. 10.을 납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납기일 이후 체납자인 B로부터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체납자의 재산전산자료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이 B의 체납처분면탈행위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한 시기 역시 2022. 5. 12.경인 점, ③ 달리 원고가 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와 그 사해의사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매도인인 B의 체납사실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였다거나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어떤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3. 3.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나 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7. 3. 31.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였으나, B가 2017. 2.경 D에게 주유소용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매매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접수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달도 채 되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피고가 선의 항변을 하고 있지 않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 주식회사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이전하여 줄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K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매매대금으로 위 회사로부터 1,177,368,24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177,368,243원이라고 일응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880,119,4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177,368,243원 중 5억 원을 B 측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677,368,243원(= 1,177,368,243원 - 5억 원)만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677,368,24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7,368,2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 가부에 관한 주장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 3. 10.자 매매계약은 통정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그 실질은 명의신탁이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다.

나)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만약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면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사해행위로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시 제3자가 취득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소 범위에 관한 주장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107,222,513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K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177,368,243원에서 원고가 이미 공제한 5억 원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가 부담한 취득세 13,690,000원, B의 부탁에 따라 피고가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L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정증서를 써 주었으므로 해당금액 1억 원, 이 사건 부동산을 K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피고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436,455,730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납세의무면탈행위를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고 처분을 받고 피고가 납부한 벌금 2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받은 이익은 107,222,513원(= 1,177,368,243원 - 5억 원 - 13,690,000원 - 1억 원 - 436,455,730원 - 20,000,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이란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책임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사해행위 자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일응 해당 부동산 자체를 의미하고 따라서 원물배상이 원칙이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하는 데에 든 비용이나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B 측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으로 공정증서상의 1억 원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납세의무면탈 방조행위로 인한 통고 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액도 피고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 희, 판사 김혜령, 판사 윤영수

목 록

1. 경기도 의정부시 E 답 11m'
2. 경기도 의정부시 F 답 507m'

